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 "장병내일준비적금"이라 한다)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<u>33퍼센트</u>에 해당하는 금액 ② (생략)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~ (중략) ~ 제출해야 한다. ④ (생략) ⑤ (신설)	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<u>71퍼센트</u>에 해당하는 금액 ②~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동호에 따른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의 기준, 신청 절차, 증빙서류,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(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